

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2일
합 병 전 법 인	갑	상호(명칭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	성명(대표자)		전화번호	
		주소			
	을	상호(명칭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	성명(대표자)		전화번호	
		주소			
합 병 후 법 인	상호(명칭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	성명(대표자)		전화번호		
	주소				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.

년월일

합병 전 법인(갑) 대표자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합병 전 법인(을) 대표자(서명 또는 인)

합병 후 법인 대표자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.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공무원 확인 사항	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유의사항

권리를 승계받은 합병 후 법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